

4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
: 변경사항 없음
5. 건축물의 설계,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
: 해당사항 없음
6. 기타 사항
: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(전화 : 02-2133-7137), 서
초구 주거개선과 (전화 : 02-2155-7342)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◆ **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56호**

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345호(2009.9.10)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
고시 제2010-336호(2010.09.30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76호(2013.06.07), 서울특별시 고시
제2016-166호(2016.06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56호(2017.2.23.) 등으로 재정비촉진계획
변경결정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
2.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같
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
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7월 13일
서울특별시장

1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
구 분	지 구 명	유 형	위 치	면적(㎡)	비 고
기 정	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대	370,844㎡	최초지정일 : 2009.9.10 (서고 2009-345호)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

- 가. 기준년도 : 2010년
나. 목표년도 : 2018년

3.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없음

- 가.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도모
나. 청량리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
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(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
수행)하며,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

4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구분	사업 방식	구역명	위 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총 계				370,844.0	－	370,844.0	－
	소 계			147,951.9	－	147,951.9	－
촉진 구역	도시 환경 정비 사업	청량리1 재정비촉진구역	용두동 10－12일대	1,819.2	－	1,819.2	－
		청량리2 재정비촉진구역	용두동 786일대	1,938.3	－	1,938.3	－
		청량리3 재정비촉진구역	용두동 11－1일대	7,025.0	－	7,025.0	－
		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	전농동 620－51일대	41,602.5	－	41,602.5	－
		용두1 재정비촉진구역	용두동 26일대	51,706.5	－	51,706.5	－
		전농 재정비촉진구역	전농동 494일대	27,623.4	－	27,623.4	－
		전농12 재정비촉진구역	전농동 643일대	16,237.0	－	16,237.0	－
존치 지역	소 계		－	222,892.1	－	222,892.1	－
	존치관리구역		－	222,892.1	－	222,892.1	－

5.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(변경) : 청량리1~3, 용두1, 전농, 전농12구역은 변경없음.

6.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가. 재정비촉진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청량리4 재정비촉진구역 (도시환경정비사업)	동대문구 전농동 620-51일대	41,602.5	-	41,602.5	

나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41,602.5	-	41,602.5	100.0	-
주거지역	소 계	1,509.7	-	1,509.7	3.6	
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475.9	-	475.9	1.1	
	제3종일반주거지역	1,033.8	-	1,033.8	2.5	
상업지역	소 계	40,092.8	-	40,092.8	96.4	
	일반상업지역	40,092.8	-	40,092.8	96.4	

다.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(1) 미관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 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 고
기정	왕산로	중심지 미관지구	동대문~청량리 동 80-1	100,800	4,200	양측12	-	-
기정	답십리로	일반 미관지구	전농동 621-2~ 답십리 2-146	63,000	2,100	양측15	-	-

(2) 방화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지구명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-	방화지구	청량리동 176일대	26,995 (57.4)	-	-
기정	-	방화지구	동대문~청량리간	84,720 (3,452.8)	-	-

※ ()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

라.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41,602.5	-	41,602.5	100.0	-
획 지	소 계	26,330.2	-	26,330.2	63.3	-
	업무, 판매, 주거, 숙박, 문화,복합용지	26,330.2	-	26,330.2	63.3	-
정 비 기 반 시 설	소 계	15,272.3	-	15,272.3	36.7	-
	도 로	9,874.0	-	9,874.0	23.7	-
	공 원	3,522.0	-	3,522.0	8.5	가로공원, 소공원, 어린이공원
	광 장	495.0	-	495.0	1.2	-
	녹 지	842.7	-	842.7	2.0	경관녹지
	보행자전용도로	538.6	-	538.6	1.3	-

마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(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대로	1	51	35~38	주 간선	1,980 (229)	신설동 101-7	청량리 11호광장 청량리동749	일반 도로	-	-	-
기정	대로	2	1	3~34	보조 간선	276	전농동 625-3	전농동 588-49	일반 도로	-	-	-
기정	대로	3	130	25~47	보조 간선	2,100 (262)	오스카 극장동측	전농동 광장	일반 도로	-	-	-
기정	중로	2	379	15	집산 도로	92 (6)	용두동 9-7	용두동 47-7	일반 도로	-	서고 제359호 (’96.12.31)	-
기정	중로	2	380	12~15	집산 도로	303	전농동 622-8	전농동 620-67	일반 도로	-	-	-
기정	소로	3	-	6	특수 도로	90	전농동 620-88	전농동 620-51	보행자 전용 도로	-	-	-

※ ()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

(2) 공원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①	공 원	가로공원	전농동 620-51일원	2,343.1	-	2,343.1	-	-
기정	④	공 원	소공원	용두동 7일원	497.2	-	497.2	서고제336호 (‘10.9.30)	-
기정	㉓	공 원	어린이 공원	용두동 9-11일원	1,581.5 (681.7)	-	1,581.5 (681.7)	서고제359호 (‘96.12.31)	-

※ ()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

(3)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①	녹지	경관녹지	전농동 623-4일원	842.7	-	842.7	-	-

(4) 광장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㉔	광 장	일반광장	전농동 588-1일원	24,360.7 (495.0)	-	24,360.7 (495.0)	서고 제1093호 (‘66.11.26)	-

※ ()는 구역내에 관한 사항임

(5) 지하도로 결정(변경)조서

■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폭 (m)	연장 (m)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①	도로	지하 도로	전농동 620-69일원	5.7~ 22.0	36.3	304.5	-	304.5	-	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(4번출구)
기정	②	도로	지하 도로	청량리동 819일원	6.1~ 15.8	52.3	685.8	-	685.8	-	지하도로 입체적 결정 (5번출구)

■ 입체적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폭 (m)	연장 (m)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①	도로	지하 도로	전농동 620-69일원	5.9	7.5	44.25	-	44.25	-	지하1층 (H=4.23m)
기정	②	도로	지하 도로	청량리동 819도일원	15.0	3.1~ 8.2	84.45	-	84.45	-	지하1층 (H=4.5m)

바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시 반영

사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: 변경

(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: 변경없음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이 주	
기정	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	41,602.5	복합용지	26,330.2	전농동 620-47일원	132	-	-	-	132	-

(2)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 치	주 된 용 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, 층수 (지상/지하)
	명 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
기정	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	41,602.5	복합 용지	26,330.2	전농동 620-47 일원	업무, 판매, 주거, 숙박, 문화	60 이하	990 이하	200m이하
변경	청량리4 재정비 촉진구역	41,602.5	복합 용지	26,330.2	전농동 620-47 일원	업무, 판매, 주거, 숙박, 문화	60 이하	996 이하	200m이하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■ 건축한계선 •대로 2-1호선변 : 3m •중로 2-380호선변 : 3m •대상지 북측 민자역사 연결지역 : 5m						

(3) 공공시설제공에 따른 용적률계획 : 변경없음

■ 공공시설부담률(%) = $\{(15,272.3-5,291.7-4,819.0)/41,602.5\} \times 100 = 12.41\%$

구분	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(㎡)	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(㎡)	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(㎡)	촉진구역 총면적(㎡)	순부담률 (%)
기정	15,272.3	5,291.7	4,819.0	41,602.5	12.41

(4) 용적률계획 : 변경

■ 기준용적률

용도지역	획지면적(㎡)	용적률 적용기준(%)	비 고
계	26,330.2	-	서울시 도시계획조례
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247.7	200	
제3종일반주거지역	-	250	
일반상업지역	26,082.5	800	

※ 기준용적률 : $(247.7\text{㎡} \times 200\% + 26,082.5\text{㎡} \times 800\%) / 26,330.2\text{㎡} = 794.4\%$

■ 상한용적률

구 분	산정내용	비 고
기정	- 개발가능용적률 = 기준용적률 $\times (1+1.3\alpha)$ $= 794.4\% \times (1+1.3 \times 0.197) = 996.8\%$ ※ α값 =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/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$= \{15,272.3 - (5,291.7 + 4,819.0)\} / 26,330.2 = 0.196$ - 상한용적률 = 990%이하	서울시 도시계획조례
변경	- 개발가능용적률 = 기준용적률 $\times (1+1.3\alpha)$ $= 794.4\% \times (1+1.3 \times 0.197) = 996.8\%$ ※ α값 =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/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$= \{15,272.3 - (5,291.7 + 4,819.0)\} / 26,330.2 = 0.196$ - 상한용적률 = 996%이하	

아.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: 변경

주택연면적 비 율	65%이하	
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문화시설 확보	기정	○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기여의 50%이상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, 공공기여 잔여분은 문화시설로 공급 ▷ 장기전세주택 공급량 = $26,330.2\text{㎡} \times 32.5\% = 8,557.3\text{㎡}$이상 ○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▷ 기준 : $8,557.3\text{㎡} \times 50\% = 4,278.6\text{㎡}$이상 ▷ 계획 : 4,388.6㎡ [전용면적 60㎡이하 64세대(100%)] ○ 문화시설 공급계획 : 건축연면적 1,709.4㎡ (토지 + 건축물)

주택연면적 비율		65%이하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기정	○ 주택 전체 연면적의 80%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 ○ 건설비율(장기전세주택 포함 전체 세대수 1,436세대) ▷ 전용면적 60㎡이하 : 64세대 ▷ 전용면적 60~85㎡이하 : 1,252세대 ▷ 전용면적 85㎡초과 : 120세대
	변경	○ 주택 전체 연면적의 80%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 ○ 전체 세대수 : 1,425세대 (장기전세주택 64세대 포함) ▷ 전용면적 60㎡이하 : 64세대 ▷ 전용면적 60~85㎡이하 : 1,232세대 ▷ 전용면적 85㎡초과 : 129세대

■ 주택규모별 건설계획

구분	주택규모	국민주택규모		85㎡ 초과	합계
		60㎡이하	60~85㎡		
기정	세대수 (장기전세주택)	64 (64)	1,252 (-)	120 (-)	1,436 (64)
	비율	4.4%	87.2%	8.4%	100.0%
변경	세대수 (장기전세주택)	64 (64)	1,232 (-)	129 (-)	1,425 (64)
	비율	4.5%	86.4%	9.1%	100.0%

자.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구분	계획내용	비고
도시 경관	· 경관계획 -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·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계획 -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 연속성을 확보하되 주요부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 - 건축물 전면에 유요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가로망 확보, 보행자의 쾌적성 등을 제공함	-
환경 보전	· 토양오염방지 - 불투수 포장면 최소화 · 녹지조성 -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	-
재난 방지	·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함 · 터파기 공사시 균열,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· 건설소음 - 가설방음 판넬 설치 - 저소음 건설 기계 등을 선택하여 주간(08:00~18:00)에만 작업 실시 · 먼지 - 방진망 설치 :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 판넬과 연계된 방진망(H=1.5m) 설치 -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(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) - 주기적인 살수 실시(하계기준 1일 6회 이상)	-

차.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: 변경없음

- 본 사업지는 상업지역 밀집지로 자연적인 지형 및 식재, 식물상이 빈약하여 보호수 또는 양호한 수목이 전무한 상태이나 사업시행시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구역내 나대지 지역에 이식 후 재식토록 함

카. 정비사업 시행계획 : 변경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	비고
도시환경 정비사업	구역지정 후 4년 이내	토지등소유자	기정	1,304세대 증가	해당사항없음	-
			변경	1,293세대 증가		

※ 증가예상 세대수 = 계획세대수(1,425세대) - 기존세대수(132세대) = 증)1,293세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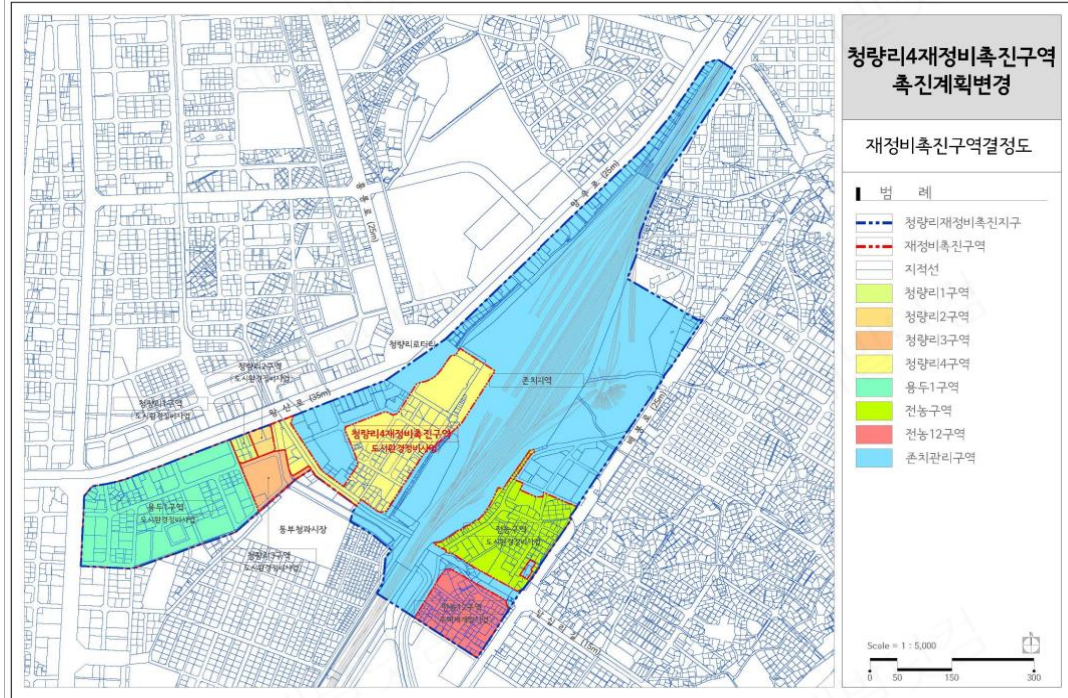
7. 기타사항

-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「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」에 명시
-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(사업시행자)에서는 가로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 제안하고 동대문구에서는 입안절차를 이행 할 것
- 사업시행자는 문화시설내에 청량리 620 역사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할 것
- 청량리620 역사생활문화공간은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부담금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 하되,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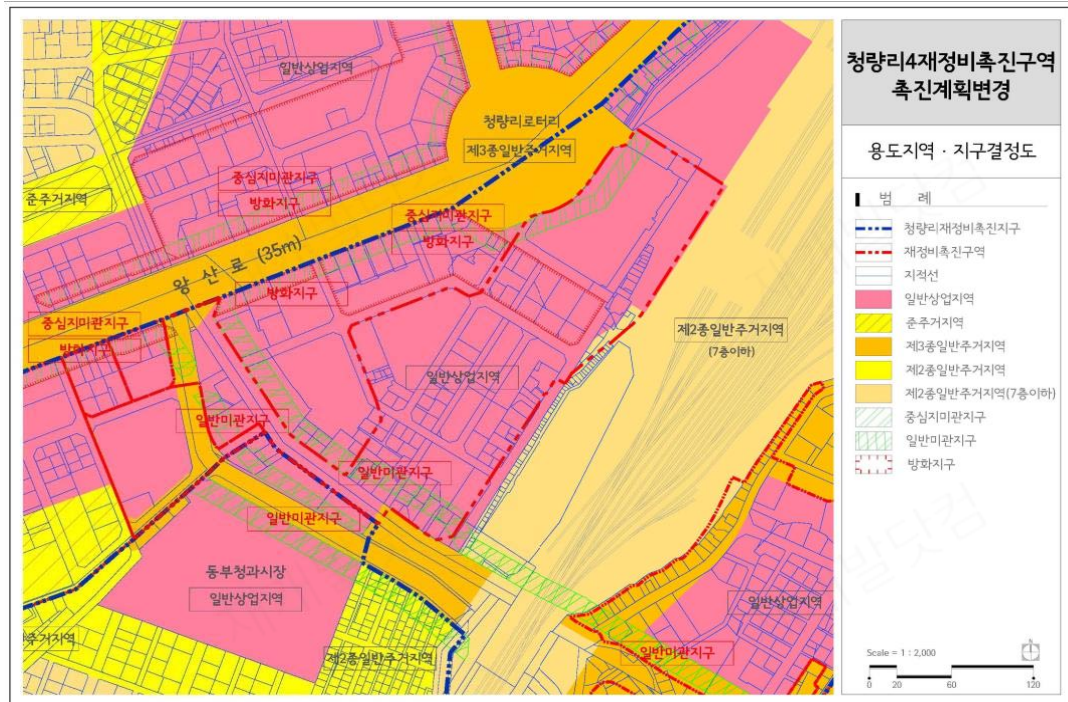
8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

9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26) 및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(☎02-2127-4292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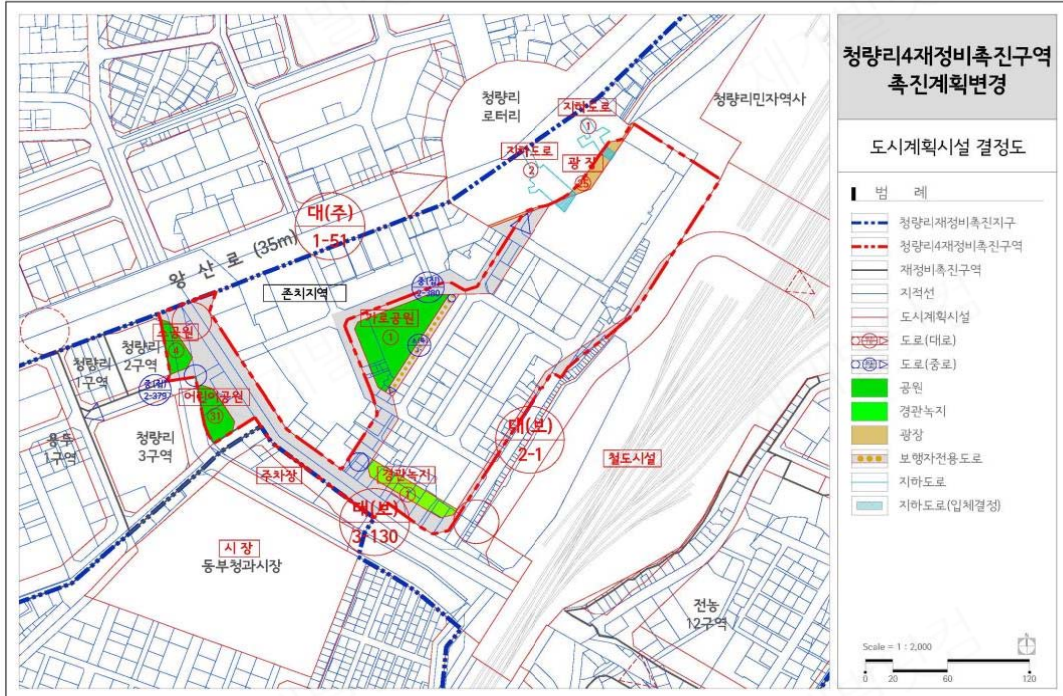
<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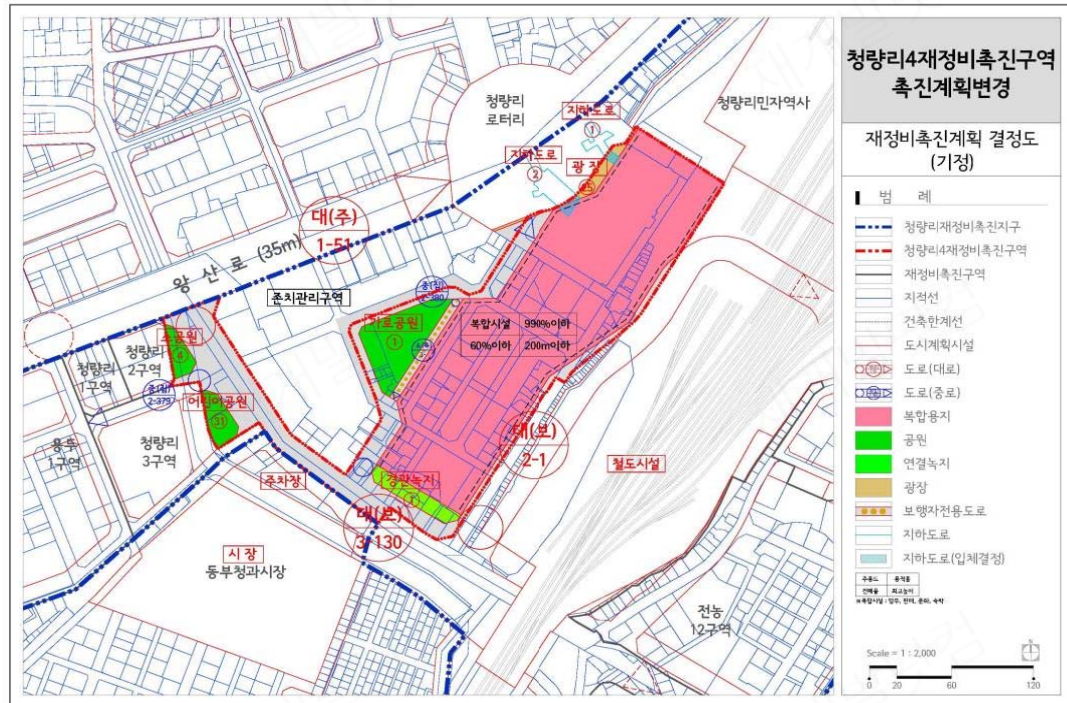
<용도지역 · 지구 결정도>



<도시계획시설 결정도>



<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(기정)>



<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(변경)>

